

5월 20일부터 병·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.

-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(5.20.)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병·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.

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.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(법률 제19420호)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.

* (적발·환수 현황)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.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,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

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,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.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(앱)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.

<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>

- ① (신분증)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(행정·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,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)
 - ② (전자서명인증서)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금융인증서(금융결제원), 디지털 원패스(행정안전부), 간편인증(PASS, 네이버·카카오 인증서, 삼성페이, NH인증서 등) 등
 - ③ (본인확인 서비스)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(NH농협카드 등), 은행(KB국민은행) 등
 - ④ (전자신분증) 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(PASS) 등
- ※ 신분증 사본(캡처, 사진 등),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

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.

<본인확인 예외 사유>

- ① (미성년자)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- ② (재진)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
- ③ (처방약 조제)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- ④ (진료 의뢰·회송)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- ⑤ (응급환자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- ⑥ (기타)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(중증장애인, 장기요양자, 임산부)

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,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.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.

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(1577-1000)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.

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“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”이라면서, 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,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총현 (044-202-2710)
		담당자	사무관	안정습 (044-202-2706)
	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	책임자	실 장	김문수 (033-736-3300)
		담당자	부 장	한세정 (033-736-3305)

Q1

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’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A1

-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**환자 안전을 확보**하고 **건강보험 도용을 방지**하기 위해서입니다.
 - 동명이인,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,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우려가 있습니다.
 - 또한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건강보험 자격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관련 사례>

- 외국인 A는 ‘15년경 우연히 알게 된 B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 ‘15.9.23부터 ‘19.6.5.까지 46회에 걸쳐 입원, 외래 및 처방을 받았다. 이후 보건소를 통해 신분 도용 사실을 안 B는 건보공단에 증도용 사실을 신고하였다.
 - ⇒ 건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, 급여비 1,030만 원 환수 결정
- 내국인 A는 지인 B의 주민등록번호로 ‘19.10.25부터 ‘22.1.17.까지 총 87회에 걸쳐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 자격을 도용하였다. B는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용 사실을 인지하여 공단에 증도용 사실을 신고하였다.
 - ⇒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, 건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 선고, 급여비 394만 원 환수 결정

Q2

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?

A2

- 휴대폰에 **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**가 가능합니다. (모바일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(PASS) 등도 확인 가능)
 - ※ 구글 플레이스토어 /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‘모바일건강보험증’ 검색 → 설치
-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**진료비를 본인부담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)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**
 - ※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(요양기관 안내에 따름)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시 확인 가능

Q3	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?
A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벌칙) <u>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(도용 등) 한 자, 사용하도록 한 자</u>(명의 대여 등)는 <u>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</u>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○ (부당이득금) <u>자격도용 등 적발 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</u>하며, 이를 <u>도운 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환수</u>할 수 있습니다.
Q4	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되는지?
A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과태료) <u>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</u>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<u>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(5.20~8.20)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</u>할 예정입니다. - 1차 위반(30만원), 2차 위반(60만원), 3차 위반(100만원) ○ (부당이득금) 자격도용 등 적발 시, <u>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</u>될 수 있습니다.
Q5	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될지요? (요양기관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거부 등)
A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편 사항은 <u>건보공단 누리집</u>(민원 요기요) 또는 <u>고객센터</u>(1577-1000)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